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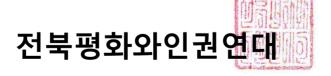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수 신	처	전북지역 각 언론사 사회부
(경 ·	유)	담당 기자
제	목	[보도요청] 전라북도 시장·군수 후보 대상 인권제도화 관련 정책질의 결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시장·군수 후보 대상 인권제도화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결과

-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994년 창립하여 차별 없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지향하는 전북 지역의 인권 운동단체입니다.
- 3. 본 단체는 6월 7일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라북도 내 시장·군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인권제도화 관련 정책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오니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정책질의 배경 (2매) 정책질의 내용 (1매) 정책질의 회신결과 (5매) 인권제도화 질의 관련 본 단체 입장 (1매)



담당 : 양혜진

시행: 18-02-정 (2018. 6. 11)

[5499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46-8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공동대표 : 문규현, 송기춘

접 수: (2018.

누리집 http://www.onespark.or.kr

E-mail: onespark98@gmail.com

[첨부1] 정책질의 배경

전라북도 시장・군수 후보 인권제도화 정책 질의

○ 정책 질의 배경

2018년 1월 지역방송에서는 군수부인 갑질 사건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16년 6월 9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장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이 통보되었음에도불구하고 '지자체 단체장 부인의 갑질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었던 시대에 이러한 적폐가 지역에서 지속되었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7일엔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주에서 '전주퀴어문화축제' 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보수기독교단체들은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퀴어 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시가행진을 진행하고, 동성애로 에이즈가 만연한다는 등 고의적인 사실 왜곡과 혐오 선동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증폭시켰습니다. 게다가 보수기독교단체 및 반동성애 단체들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 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 포함)를 준비하는 선거 사무실에 '정책질의서 송부 및 답변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군형법 제92조의 6등과 관련 총 10개 질문으로 구성된 이 질의서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이주민, 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인권의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관계로 인한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 차별과 혐오의 위협을 받는 존재들이 우리 이웃인 지역주민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존엄함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과 지자체의 적극적인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은 국가와 함께 모든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통솔하고 있는 행정은 사회복지, 보건, 교육, 식수, 세금 등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권에 기반을 둔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행정의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을 가지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인권제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인권제도 도입 모색은 2007년부터 경남 진주에서시작되어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가운데 91개 지자체(37.1%)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국가인권위, 2016)

현재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3개 지자체의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등한 상황으로 인해 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차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주민인권 보장 및 증진은 지자체 장의 책무이기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조례제정을 통해 인권제도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구체적인 차별금지 사유의 명문화 등을 추진하여 조례의 내실화·실질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조례 제정과 시행은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자체의 장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행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단체는 인권제도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귀 후보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의 결과는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지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답변 : 저희 단체의 메일(<u>onespark98@gmail.com</u>) 또는 팩스(063-278-9332) 로 회신해주십시오.

[첨부2] 정책질의 내용

선거구	시·군	정당	후보이름

○ 질의 내용

질의 1 귀 후보는 당선된다면 시·군의 인권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질의 3번에 답변해주십시오)
- ② 아니오 (질의 4번에 답변해주십시오)
- ③ 해당사항 없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질의 2번에 답변해주십시오)

질의 2 귀 후보의 취임 이전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면, 귀하는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답변 후 4번 질의에 답변해주십시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질의 3 귀 후보가 시장(군수)으로 당선된다면 인권조례 제정 시기 및 계획에 대해 답변 해주십시오.

- 1) 제정 시기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 ① 2018년
- ② 2019년
- ③ 2020년
- ④ 2021년
- 2) 제정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질의 4. 귀 후보가 인권조례 제정 외에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인권정책 및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 후보가 인권 관련 공약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순으로 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고창군 (인권조례 없음)

	1.	2.	3-1.	3-2.	4.
	인권조례	인권조례	인권조례	구체적인	인권관련
질문내용	제정의향	필요성에	제정 시기	제정계획	공약
		대한 인식			
					노인공동홈 확대,
더불어민주당 박우정	0		2019년		결혼이주여성 계약직
					공무원 이용
					여성농업인출산도우미
					지원, 여성화장실및
민주평화당 유기상	검토중				여성우선주차구역
					확충,
					여성친화시범거리조성

○ 군산시 (인권조례 제정됨)

질문내용	1. 인권조례 제정의향	2. 인권조례 필요성에 대한 인식	3-1. 인권조례 제정 시기	3-2. 구체적인 제정계획	4. 인권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대체로 동의			
바른미래당 진희완		매우동의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여성의 복지지원확대, 노인전문연구상담센 터 설립
민주평화당 박종서		매우동의			

→ 서동석, 이근열, 김용경(질의서 내 인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 후보 답변하지 않음.

○ 김제시 (인권조례 없음)

→ 박준배, 정성주 후보 답변하지 않음.

○ 남원시 (인권조례 없음)

	1.	2.	3-1.	3-2.	4.
	인권조례	인권조례	인권조례	구체적인	인권관련
질문내용	제정의향	필요성에	제정 시기	제정계획	고약
		대한 인식			
디브시미즈다 이하조			20101∃	전문가중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2018년	구성	
				사례조사 및	
				분석,	
민주평화당 강동원	0		2020년	시민여론수렴,	
				관계기관 협의해	
				제정	

→ 박용섭, 김영권 후보 답변하지 않음.

○ 부안군 (인권조례 없음)

질문내용	1. 인권조례 제정의향	2. 인권조례 필요성에 대한 인식	3-1. 인권조례 제정 시기	3-2. 구체적인 제정계획	4. 인권관련 공약
바른미래당 김경민	0		2019년		성인지예산 편성
민주평화당 김상곤	0		2018년	주민공청회, 부안군의회와 협조	다문화정책마련, 장애인전용체육관설립, 장애인의 날 행사비증액, 조례개정으로 장애인2,3급도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

→ 권익현, 김종규 후보 답변하지 않음.

○ 순창군(인권조례 없음)

→ 황숙주, 홍승채, 강인형 후보 답변하지 않음.

○ 완주군(인권조례 없음)

→ 박성일, 박재완 후보 답변하지 않음.

○ 익산시 (인권조례 제정됨)

	1.	2.	3-1.	3-2.	4.
حا □ ۱ ا ۱ 0	인권조례	인권조례	인권조례	구체적인	인권관련
질문내용	제정의향	필요성에	제정 시기	제정계획	공약
		대한 인식			
					긴급도움재단설립,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매우동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취업지원확대

→ 정헌율 후보 답변하지 않음.

○ 임실군 (인권조례 없음)

→ 전상두, 심민, 박기봉 후보 답변하지 않음.

○ 장수군 (인권조례 없음)

질문내용	1. 인권조례 제정의향	2. 인권조례 필요성에 대한 인식	3-1. 인권조례 제정 시기	3-2. 구체적인 제정계획	4. 인권관련 공약
무소속 김창수	조례 제정은 군수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은 의회의 책임	인권조례 제정은 필요함.			장수인권아카데미, 반성폭력교육강화, 통합적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장애인 지원정책, 이주여성·이주노동 자·다문화가정지원 사업

→ 장영수, 김창수, 이영숙, 배한진 후보 답변하지 않음.

○ 전주시 (인권조례 제정됨)

질문내용	1. 인권조례 제정의향	2. 인권조례 필요성에 대한 인식	3-1. 인권조례 제정 시기	3-2. 구체적인 제정계획	4. 인권관련 공약
민주평화당 이현웅		매우동의			
정의당 오형수		매우동의			장애인숲속 산책길 조성, 성평등지원센터 설립, 인권단체 사업지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매우동의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어울림센터설립, 지역사회 치매안심체계구축

○ 정읍시 (인권조례 없음)

질문내용	1. 인권조례 제정의향	2. 인권조례 필요성에 대한 인식	3-1. 인권조례 제정 시기	3-2. 구체적인 제정계획	4. 인권관련 공약
무소속 강 광	0		2019년		
무소속 이학수	0	매우동의	2019년		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확대,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 유진섭, 한병옥, 김용채, 정도진 후보 답변하지 않음.

○ 진안군 (인권조례 없음)

	1.	2.	3-1.	3-2.	4.
질문내용	인권조례	인권조례	인권조례	구체적인	인권관련
크산네 <u>ㅇ</u>	제정의향	필요성에	제정 시기	제정계획	공약
		대한 인식			
					농민기본소득20만원
무소속 박수우		매우동의	2019년	별도위원회 구성	지원, 청년기본수당,
T-4 7TT			2010 년	로그러던커 ㅜ 0	중증 장애인
					최저생계비지원
					영화관 자막서비스,
				2018년 공청회	청각장애인 부부
				등 의견수렴	자녀 언어교육지원,
더불어민주당 이항로	0	매우동의	2019년	절차 이후	지적장애인부부
				군의회와 조정을	육아지원,
				통해 진행.	발달장애어린이
					키움센터 설치

→ 이충국 후보 답변하지 않음

지역 인권조례제정 및 인권조례 내실화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본 단체의 이번 정책질의는 앞으로 지역의 살림을 책임질 전라북도 내 시장·군수 후보들의 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묻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본 단체의 인권제도 화에 대해 질의에 18명의 후보들만이 답변하여 답변 비율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에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인권공약은 전무한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당선 이후에 주민행정을 펼쳐나갈 때 그 밑바탕엔 지역주민의 인권보장이 있어야 하며,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가 필요합니다. 인권조례란 주민의 인권의 보호 및 증진과 차별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인권조례제정이 왜 필요한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는 인구의 유출 규모는 큰 반면 인구유입이 적으며 오랜 역사와 경험에 기초한 전통, 문화, 관습으로 새로운 인권 영역의 확장과 인권 보호체계를 발전시키려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공동체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런 특성으로 지역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공공의 질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게 되어 인권의 가치와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의 관행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인권의 개념과 충돌하게 되어 인권침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역공동체가 갖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성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 안효섭,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4>

지역 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밀접하게 얽혀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행정력을 미치는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훨씬더 중요합니다. 전주, 익산, 군산은 현재 있는 인권조례를 내실화 있게 실천해나가는 계획이 필요하고, 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은 인권조례 제정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는 일일 것입니다. 본 단체의 정책질의에 답변해 주신후보님들은 답변한대로 인권조례 제정에 힘써주시고,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도 인권조례제정에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